

전자무역지원을 위한 개정 대외무역법의 내용과 문제점

한상현*

요 약

본 연구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가 추진하여 2000년 6월 17일 입법 공고되어 2001년 3월부터 시행된 대외무역법의 디지털제품(온라인거래)의 수출입실적 인정 및 전자무역증개기관도입 관련조항 등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전자무역지원법령으로의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는 의미를 평가하고, 개정내용의 조문에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실무자들로 하여금 적용상의 유의점들을 제시하고 향후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서론

새로운 인류역사의 천년을 알리는 2000년 초 대 국민 신년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하여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 진흥”이 천명된 이래 디지털 관계부처에서는 2월 15일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 산업자원부 소관업무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이른바 사이버무역¹⁾의 촉진이며²⁾, 이에 대응하는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가 대외무역법령을 사이버무역지원법령으로 개정하는 작업이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지난 1999년 10월 26일 대외무역법 개정시안을 발표하였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2000, 10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는데, 이 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2001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1년 3월부터는 음악파일, 게임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컨텐츠(제품)³⁾를 해외에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아 무역금융이나 벤처지정, 병역지정업체 추천과 같은 수출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수입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혜택 등 수출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그 동안 가상공간을 통한 기업간(B2B) 전자무역거래 시 가장 문제점으로 손

* 강남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겸임교수

1) 복잡한 무역절차의 일부를 IT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사이버무역으로 간주할 것인가는 논란이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정책수립 지침이 되는 사이버무역의 통계를 “계약이전의 거래알선 단계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중(99년 8.8%, 2000년 18.7%)”과 “계약이후의 서류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비중(99년 37%)”을 주로 포함하여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IT기술을 활용한 모든 무역절차를 사이버무역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정부는 사이버무역의 비중을 1994년 4.6%에서 2003년 30.4%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産業 資源 部 · 情 報 通 信 部 外, 電 子 商 去 來 活 性 化 綜 合 對 策, 2000, 2, 15).

3) 디지털제품이란 물품이 오프라인 선상에서도 인도가 가능하지만 그 특성상 온라인에서 인도가 될 수 있는 영화,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뽑혔던 거래 상대방의 신원보장, 신용정보, 인터넷 EDI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부공인 전자무역중개기관이 내년에 출범함에 따라, 무역업계는 산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중개기관을 통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전자무역을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되었다.⁴⁾ 이번 대외무역법 개정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적으로 전자무역을 크게 확산되고 있으나 초고속통신망, 인터넷인구 등 잠재력에서 우리나라만큼 전자무역 여건이 성숙된 나라가 많지 않다는 판단하에 정부가 시의 적절하게 전자무역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올해 6월 17일 입법 공고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사이버무역지원법령으로의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는 의미를 평가하고, 개정안 조문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입법에 일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조문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주로 개정안중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제품 및 전자무역중개기관 관련조항 등의 법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무역법규로서 대외무역법의 특성과 개정배경

2.1 무역관리정책의 필요성과 무역관리법규

무역(수출입)거래는 국민경제와 국민의 소

비생활, 자국의 국제경쟁력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물품의 수출과 수입, 결제방법, 거래형태, 수출입업자의 자격요건,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보호 등과 연계시켜 자국내의 수출입절차를 규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통제·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출입의 단계마다 해당되는 각종 법규에 의하여 제한과 금지 또는 우대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규를 마련하고 있지만, 무역관리의 기본이 되는 3대 법규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관리법, 관세법이다.⁵⁾

2.2 현행 대외무역법의 발전과정⁶⁾

현행 대외무역법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보면 다음의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현행 대외무역법의 모체가 되는 무역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시기로 1945년 8월 해방부터 정부수립을 거쳐 1957년 무역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말하고, 제2기는 무역법이 시행된 시기로서 1957년 12월 무역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1967년 1월 무역거래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를 말한다. 그리고 제3기는 무역거래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1987년 6월 무역거래법이 폐지될 때까지이고, 제4기는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1987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를 말한다.⁷⁾

수출입거래를 관리하는 기본법으로 1986년 12월에 제정되어 1987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5) 즉,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절차, 수출입물품 및 거래형태 등에 대한 관리와 관세법에 의한 수출입통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대금결제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가 각 단계와 특성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6)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상현 외, 국제통상법규, 도서출판 신성, 1999, 2, pp.13-15 참조.

7) 申東洙, 對外貿易法, 法經社, 1996, 2, pp.51-52.

4) www.kmi.re.kr/kor/alim/200010/alim200010171.htm

되고 있는 대외무역법은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 및 개방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성 제고와 질서가 있는 수출로 대외신용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요 제정 취지였다.

현행의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법을 대체하는 법률로 새로이 제정된 이후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왔다. 즉, 현재의 대외무역법은 1996년에 전문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1997년 12월, 1998년 9월, 1999년 2월에는 일부 법조문이 발전적으로 개정되었다.⁸⁾

한편, 대외무역법의 하위법률로서 대외무역법시행령은 1987년에 공포되어 1997년 2월에 전문이 개정되기까지 그 동안 10차례 걸쳐 개정되었으며, 대외무역관리규정은 1987년에 공고된 이후 40여 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2.3 현행 대외무역법의 특성과 사이버 무역정책의 필요성

1) 현행 대외무역법의 특성

첫째,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관리에 관한 법, 즉 수출입관리를 위한 일반법이자 기본법이다.

둘째,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거래를 관리하는 법이므로 국제성을 인정하여 국제 상거래관습이나 국제조약을 준수하되, 국제법규나 국제협정에서 무역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다.

셋째, 무역거래의 규제대상은 유동적이고 규제방법은 추상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칙적인 사항만 규정해 놓

고 시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이나 통상산업부장관이 제정하는 대외무역법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보충하기 위해 법규 보충적 작용을 담당하는 고시, 공고, 유권해석, 예규, 통첩 등이 활용된다.

2) 사이버 무역정책의 필요성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미래의 꿈으로나 그려지던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가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보급속도 만큼이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와 이용자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를 추산하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그것은 EC가 아직 태동단계이고 대부분의 기업이 전통적인 거래와 EC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일반적으로 EC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1998년 대비 향후 5년 간 연간 69%씩 증가하여 2003년에는 1조 불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⁰⁾

이에 따라 최근 WTO와 OECD 등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가상공간에서의 새로운 경제·무역 질서를 확립키 위한 다자간 규범 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고 선진국도 민·관 공조를 통해 다각적인 전자상거래 지원정책 및 법규를 수립·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¹¹⁾

전자상거래의 한 분야로서 인터넷을 이용

9) 동아일보, 1999, 5. 21.

10) 재정경제부 세제실, 전자상거래 과세문제 검토 및 대응 방안, 회의자료, 1999, 11. 13. p.11.

11) 한상현·권오,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부과의 논의와 우리의 추진과제,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정보학연구, 제3권 제1호, 2000, 3. pp.127-128.

8) 關稅廳, 經濟國際에서 韓國經濟와 함께 한 30年~關稅廳 30年史~, 2000, 12. 15. pp.669-702

한 사이버무역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예상은 곤란하나, 사이버무역의 중요한 수단인 무역자동화¹²⁾만 보더라도 수출 한 건의 서류처리에 평균 13만원이 소요되던 것을 5배나 낮은 2만 5천 원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무역은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별도의 부담 없이 손쉽게 세계시장과 만날 수 있어 수출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이버무역은 B2C 거래와는 달리 대규모 거래가 많아 과연 몇 백만 불에 달하는 거래가 사이버공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 또한 거래선발굴 단계에서는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무역사기(예: 유명회사가 고액 샘플요구 등)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이후 결제서류가 송수신 과정은 더욱 보안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신용평가회사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인터넷 무역사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며 중요 결제서류의 송수신도 보안과 인증기술의 발달로 점차 해소되어 사이버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나 기술로는 사이버 문제점의 일부만을 해결할 수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적 사이버 무역정책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즉, 현행의 대외무역법은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추진을 예견할 수 없었던 시대에 제정된 것이어서 정보통신기술에 따른 사이버무역의 실현을 위한 지원법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현행의 대외무역법은 물품의 대외거래 시 발생하는 권리, 의무관계만을 규율하고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부문의 무역거래부문을 커버하지 못하여 법적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무역의 확산에 따라 사이버무역을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¹³⁾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입법체계의 정비가 조속히 요청되고 있다. 사이버무역을 전자상거래와 구분하여 사이버무역정책을 별도로 추진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물론 우리나라는 무역정책관점에서 사이버 무역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전자상거래와 전혀 별개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전자상거래 정책의 큰 틀 속에서 무역의 특수성을 가미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2.4 현행 대외무역법의 개정배경

전술한 바와 같이 대외무역법은 무역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산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법이다.¹⁴⁾ 따라서 이번 대외무역법의 개정배경은 이러한 대외무역법을 전자상거래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⁵⁾

1) 사이버무역의 급증에 부응

최근에 하이테크·정보통신기술(IT)이 빠르게 진전된 결과, 전자상거래¹⁶⁾가 전 세계

12) 상역·외환부문의 무역자동화서비스 이용률은 전무역업 무처리 건수기준 10% 수준에 불과한 반면, 통 관부문은 의무사용(관세청 고시)으로 무역업체의 이용률이 100%이다. 정부는 수출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하여 무역자동화 이용률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2년 50% 수준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13) www.ecommerce.go.kr/rule/rule5_1.asp

14) 서정두, 국제통상법, 삼영사, 1998, p.83.

15)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대외무역법 개정, 2000. 10. 17.

16) 사이버무역은 "기업간 국제적 전자상거래(International

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¹⁷⁾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전 세계 B2B(기업간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1998년 대비 향후 5년 간 연간 69%씩 증가하여 2003년에는 1조 불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 B2B시장의 경우도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까지 국내거래가 2조 6천 8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⁸⁾

이에 따라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인터넷으로 바이어를 찾아 상담하고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한 바이어발굴 사례가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도에는 8.8%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18.7%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을 통한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의 18.7%에 이르러 전년의 8.8%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으며, 민간 운영주체들의 등장으로 이 같은 수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¹⁹⁾ 또한 사이버무역의 증가로 현재의 무역으로는 분류되지 않았으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컨텐츠를 통신망을 통해 인도하는 국제적인 온라인거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예로 세계 온라인음반시장은 전체음반시장의 8%를 차지하여 5억불의 규모이지만, 2004년도에는 40억불로 증가될 전

망이다.

그런데 현행의 대외무역법은 지금까지 서면에 의한 거래를 전제로 한 법규이기 때문에 최신기술을 이용한 당사자간의 거래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물품매매에 있어서는 최근의 컴퓨터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물품의 거래계약이 서면이 아니라 컴퓨터상의 데이터교환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람을 개입시키지 않고 이루어지게 된다.²⁰⁾

그러나 현행의 대외무역법으로는 이러한 것을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무역의 급증에 부응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발생한 것이다.

2) 사이버무역에 대한 각국의 제도정비 강화

최근 들어 사이버거래의 등장은 예전부터 우리가 취하고 있던 법과 제도가 그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많은 요소들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미국,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각자의 입장을 국제규범에 반영하는 한편 자국내의 제도도 “전자무역, “사이버무역” 혹은 “인터넷무역”에 적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하고 있다.²¹⁾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의 産室國인 미국의 경우, 무역거래에서 컴퓨터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등의 새로운 거래수단이 많이 활용됨에 따라, 지금까지 서명예

B2B)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무역과 전자상거래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사이버무역도 전자상거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무역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상거래와 별도로 무역을 다루듯이, 전자상거래와 별도로 사이버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에 있다.

17) 한상현 외, 전자상거래하에서 물품매매계약의 성립시기 - EDI, E-Mail, WWW를 중심으로 -, 강원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산업과 경제 제9집 2호(통권 제17호), 1999, 12 p.87.

18) 한상현 외, 전계논문, p.127.

19) www.keb.co.kr/him/kor/news.htm

20) Thomas L. Lockhart and Patrick A. Miles, Jr., No More Pulp Fiction : Proposed UCC Article 2 Revisions Embraces Paperless Electronic Transactions, Michigan Bar Journal, June 1996, p.516.

21) 平野善・牧野和夫, 判例國際インターネット法, 프로스바企劃, 1998, p.663

의한 서면(a signed written instrument)을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였던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²²⁾ 그래서 최근 기술을 활용한 당사자간의 법적 권리나 의무에 관한 새로운 법과 제도의 구축이 요청되게 되었다.²³⁾ 이에 미국은 자국내의 법·제도적인 환경을 전자상거래와 인터넷거래에 적합하도록 그 동안 40여년 간 틀을 굳건히 유지하여 왔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을 약 40년 만에 대폭적인 개정작업을 거의 완료하였다.²⁴⁾

日本の 경우도 이러한 정보기술 및 디지털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적·기술적으로 모든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法務省은 서면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의 법체계로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전자거래에 대응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 1996년 7월에 有職者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 정비에 착수하는 한편 데이터의 변조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인의 전자인증제도 또는 전자공증제도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존에 사람중심이며 서류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유지하였던 현행의 대외무역법 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3) 전자무역 강국으로서의 가능성

우리나라는 초고속통신망 확충과 인터넷

인구의 급증 등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전자무역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의 활성화는 우리나라의 무역업체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효율성 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무역의 활성화는 우리기업들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완벽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구축하게 됐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²⁵⁾ 따라서 이에 적합하고 시의 적절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을 경우 21세기에는 명실상부한 무역선진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번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4) 기존 전자거래 지원법의 한계

현재 국내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제가 있어 왔으나 이들 법들은 체계적인 규정이 미흡할 뿐 아니라 특정 사업목적에 위해 제정된 법들이기 때문에 무역거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무역법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²⁶⁾ 따라서 무역거래만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법체계로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5) 신시장질서의 대응과 중소기업 지원

또 다른 개정배경중의 하나는 신시장질서의 대응과 중소기업 지원이다. 즉, 현재 각종

22) Kent D. Stuckey, Internet and Online Law, Law Journal Seminar Press, 1996. p.14.

23) 이는 소위 "Cyber 계약법", "Cyber 상거래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 분야가 등장시켰다.

24) 한삼현 외, 전자상거래/서 On-Line에 의한 매매계약성립의 전제조건~ Revised 1996 UCC Draft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경영학회, 산학경영연구, 제12권, 1999, 12. pp.303-304.

25) www.logis-net.co.kr/gisa/200009/0901-12.htm

26) www.centernews.co.kr/event/0602-2.html

간에는 막대한 무역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국제B2B 전자무역 시장 선점을 노리는 기업들로 인해 뜨겁게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e마켓플레이스 형태의 국제 B2B 전자무역 시장질서가 형성되고 있다.²⁷⁾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대응조치가 늦어질 경우 전자무역에서 중소기업은 수수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21세기 무역의 승패를 좌우할 전자무역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법체계의 확립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2.5 현행 대외무역법 개정의 기본 방향

현행 대외무역법 개정의 기본방향²⁸⁾은 첫째,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상품의 수출입을 대외무역법이 규율한다는 것이다. 즉, 서비스상품의 거래도 수출입에 포함하여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수출입통계작성 등 각종 권리, 의무체계에 영입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의 대외무역법을 사이버무역 진흥을 위한 종합 지원법으로 특화한다는 것이다. 우선 사이버무역의 공식적 정의를 통해 사이버무역의 방향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육성 및 전략 수립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호 인증을 위한 국가간 협력, 사이버무역 분쟁해결기구 설치 등 사이버무역의 기반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 무역상담회, 전시회 등 사이버 마케팅지원과 사이버무역에 대한 각종

세계 및 금융상의 지원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2.6 개정작업 추진과정과 향후 필요조치 사항

1) 대외무역법의 개정작업 추진과정

대외무역법 개정안의 초안 작성은 1999년 4월에 단체, 학계, 연구계와 공동으로 마련되었다. 여기에서는 주된 내용은 온라인 게임업체 및 S/W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지털콘텐츠의 국제적 온라인거래를 수출로 인정하는 것과 전자무역의 개념도입 그리고 전자무역종합지원기관으로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초안을 가지고 지난 5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부부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17일에서 7월 10일까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91호로 입법 예고되었다.²⁹⁾

또한 동년 4월 25일에서 10월 5일까지는 재경부, 정통부, 외교부, 법무부 등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정·합의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일부조항의 수정이 있었고, 한국무역협회가 실시한 업계실태조사와 산업정책연구원의 전자무역활성화방안 용역결과도 반영하였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는 9월 20일에, 법제처 심사는 10월 6일에 이루어졌다.

2) 향후 필요조치 사항³⁰⁾

29) 이하에서는 5월 26일자 공청회에서 공표된 개정(안)(이하 개정(초안)이라 함)과 6월 17일 공고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을 구분하여 다룬다.

30)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대외무역법 개정, 2000. 10. 17.

27) 전자신문, 2000, 5. 27.

28) www.ecommerce.go.kr/rule/rule5_1.asp

(1) 시행령의 개정

대외무역법의 개정안 통과에 부합하도록 산업자원부는 관련부처, 기관, 단체, 전문가로 시행령개정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현행의 대외무역법시행령을 다음의 일정에 따라 개정할 것으로 보이며, 그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영화,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대외무역법상 “디지털제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수출입으로 인정함으로써³¹⁾ 무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즉, 현재의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의 국외이동을 수출로 규정하여 물품으로 분류가 곤란한 디지털제품의 국외이동은 무역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시행령의 개정 추진일정	시행령 개정시 반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10~11월말 : 시행령 초안 작성 ○ 2000. 12월 : 시행령(안) 장관 보고 ○ 2000. 12월 : 관계부처 협의 ○ 2001. 1월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2001. 2월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 2001. 3월 :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컨텐츠의 수출입과 관련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컨텐츠의 유형 ○ 디지털컨텐츠의 수출입방식 ○ 디지털컨텐츠의 온라인거래 수출입확인업무 위임·위탁 □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과 관련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 요건 ○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 절차

(2) 관련법령 개정 요청사항

외국환거래법 (재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상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대금지급영수 제한면제조항을 “물품등”으로 수정(외국환거래법 제15조)- 대외무역법 부칙개정을 통해 해결 ○ 외환불법유출 감시·조사를 위해 외국환거래규정도 일부 개정
벤처기업확인요령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의 요건중 수출관련 요건을 변경 현행 :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수정 : 외국환은행 및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무역금융취급세칙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금융 용자한도 산정을 위한 수출실적에 디지털컨텐츠의 온라인거래실적(한 국무역협회장 확인서 기준)을 인정(무역금융취급세칙 제7조 및 제10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의 날 포상(무역진흥과) - 온라인거래실적이 높은 기업을 별도 포상 ○ 정보통신분야 병역지정업체 배정(정보통신부)- 온라인수출실적을 인정

III. 현행 대외무역법의 주요 개정내용 분석

3.1 전자무역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장치 마련

1) 국제간 디지털제품의 온라인거래도 수출입으로 인정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2001년부터 국가간

로 이러한 제품의 수출을 하면서도 아무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³²⁾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업계의 요청을 바탕으로

31) 다만 통관과정이 생략되는 온라인거래의 수출입 인정을 위해서는 제품의 인도사실을 확인하는 수출입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수출의 경우 ① 온라인으로 디지털컨텐츠를 인도 ② 관련 계약서를 첨부하여 무협에 수출신고 ③ 무협은 인도사실 및 계약서 확인검토(무협의 서버접속권을 인정) ④ 수출확인서 발급(외국환거래 등에 활용) 등의 수출입확인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32) 이모세 올 들어 8월말 현재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국제적 교역에서 약 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디지털제품분야의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번의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제품을 무역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제 당해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벤처기업지정 등 지원혜택도 가능하게 되었다.

2) 전자무역 개념의 도입

국제적 온라인 무역거래를 실무에서는 “사이버무역”, “인터넷무역”, “무역자동화”, “전자무역”, 혹은 “국제적 전자상거래”로 혼용하여 부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무역은 Internet으로 바이어를 찾아 상담하고 L/C, B/L과 같은 무역서류를 통신망을 통해 처리하는 무역으로서 전통무역에 IT기술이 접목되어 무역의 속도가 빨라지고 거래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Internet무역은 무역절차에 Internet을 활용하는 것으로 Internet을 통해 거래선을 찾아 상담하는 활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무역절차에 접목될 수 있는 IT기술이 반드시 Internet에 한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Internet무역은 사이버무역의 하위개념이다.

또한 무역자동화는 Internet망이 아닌 폐쇄 통신망으로 무역서류를 주고받는 것이므로 인터넷 무역이 아니라 사이버무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전자무역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 즉, 거래선 발굴, 상담, 계약, 서류처리, 통관, 인도 등 전통적인 무역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무역패러다임이다. 또한 기업간 국제적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를 국내 전자상거래와 국제 전자상거래로 구분할 경우 이국간에 행해지는 기업간 전자적 거래(International B2B)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한 용어를 포괄하는 명칭은 전자무역이며, 이는 인터넷무역, 무역자동화, 온라인거래를 총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개정안 대외무역법에서는 학계나 언론 등에서 널리 사용해 온 여러 명칭들을 대신하는 법률적 용어로 전자무역이라는 명칭을 채택하였다.

전자무역이 활성화되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해 부담 없이 거래선을 발굴하고 상담할 수 있으며 서류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며,³³⁾ 이를 통한 수출저변의 확대와 수출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전자무역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고 체계적인 전자무역 촉진시책 수립·추진을 위한 산업자원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3) 전자무역증개기관 지정제도와 전자무역 공인인증마크제의 도입

(1) 전자무역증개기관 지정제도 도입의 의의
우리나라는 제반 여건이 전자무역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무역업계를 위해 전자무역에 특화된 교육활동이나 정보제공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부족하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³⁴⁾

33) 무역자동화를 통한 수출입절차의 비용절감은 수출의 경우 건당 133천원이던 것이 25천원이 되며, 수입의 경우 건당 99천원이던 것이 21천원으로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KINET는 추정하고 있다.

34) 1999년 현재의 지정기관은 한국무역정보통신,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광주광역시정보센터, 대전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정보통신교육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등이며, 사업내용은 교육사업, 컨설팅사업, 및 기술정보확산 및 거래알선 사업이고 2001년도에는 15개로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www.ecommerce.go.kr/rule/rule5_4.asp).

는 전자상거래 전반의 교육 및 정보제공기관으로서 무역업계의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는 곤란한 입장이다.³⁵⁾ 또한 인터넷거래알선·전자문서중계 등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무수히 많은 기관의 수에 비해 서비스의 질은 낮아 전자무역의 신속한 확산에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개정 대외무역법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전자무역을 신속히 확산시키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전자무역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을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신력을 높여주면서 지정받은 기관의 의무로서 전자무역 교육, 정보제공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향후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받는 법인이나 단체, 기관은 무역업계를 위한 전자무역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성화에 첨병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자격과 혜택

전자무역중개기관은 공공단체나 기관, 법인(e-Marketplace 운영자 등) 등 신청자이며, 무역업계에 대한 전자무역 교육·홍보·자문, 거래알선사이트 운영,³⁶⁾ 전자무역문서중계 등 전자무역중개, 전자무역문서 표준화

업무 지원 등을 필수업무로 하고 있다. 시행령에 위임된 동 기관의 자격기준은 일정횟수나 규모의 전자무역 교육 시행, 무역업계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신뢰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거래알선사이트 구축·운영, 그리고 상역·외환·통관·물류 EDI망 구축(outsourcing 가능)을 예시로 하고 있다.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되면 우선 신뢰성 있는 전자무역종합지원기관으로서 기관이나 법인의 공신력이 제고되고, 교육, 홍보, 자문, 인력알선과 관련하여 필요시 예산을 지원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조치 시행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혜택을 받게 된다.

(3) 전자무역 공인인증마크제의 도입

전자무역중개기관은 인터넷 EDI를 통한 무역자동화 업무를 담당하고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디지털제품의 수출입여부를 확인하며 전자무역 공인인증마크제도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가상공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방과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무역공인인증마크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³⁷⁾

공인인증마크제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인터넷 거래알선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업체의 신뢰성을 평가해 합격자에게 이 마크를 발급함으로써 전자무역거래의 보이지 않는 모순성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향후 무역업체들은 전자무역중개기관을 통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은 무역관련 법령에서 정한 문서나 기명날인으로 간주돼 안심하고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35) www.forexbank.co.kr/TDNews/101005.asp

36) 사이버무역 관련 사이트는 IMF를 전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무역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돼 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업체 중심으로 운영주체가 대폭 변경되면서 수익모델 강화와 e마켓플레이스화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이버무역 관련 사이트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EC21(www.ec21.net),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분사하여 1997년 국내 최초로 수출입 거래알선 서비스를 시작한 EC플라자(www.ecplaza.net), 티페이지(www.tpage.co.kr), 엑스포22(www.expo22.co.kr),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파인드코리아·카오스트레이딩·실크로드21 등이 있다.

37) 내년, 정부공인 국제전자무역거래 중개기관 출범, 전자신문, 2000, 5. 27.

3.2 현실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항 정비

개정 대외무역법에는 상술한 전자무역 관련조항 신설과는 별도로, 원산지제도, 무역분쟁제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제도 등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조항도 대폭 신설하거나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³⁸⁾

1)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강화

원산지표시대상품목이 수입되어 유통되는 단계에서 판매자가 원산지를 허위·오인·손상·변경 표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안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 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백히 규정하고자 제23조 제5항을 신설하였다.

2) 무역분쟁조정제도의 신설

무역관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법적 기속력이 있는 중재제도와는 별도로 조정제도의 신설이 요청되어,³⁹⁾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산자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대외무역법 제41조 제4항에 신설하였다. 실제 조정제도의 운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위임·위탁할 예정이다.

3) 불공정무역행위규제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신설

절차법적 성격인 기존의 산업피해구제제도

관련규정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에 분산·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또한 WTO협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산업보호제도의 운용도 필요하였다. 이에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무역법 제26조~제38조에 이르는 산업피해조사 관련조항을 무역위원회법으로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대외무역법에는 관련조문을 일단 존치하고 산업피해구제법 부칙에 대외무역법 관련조문 효력상실 조항을 규정하여 산업피해구제법의 통과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제도의 공백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Ⅳ. 전자무역지원법규로의 전환 의미와 규정상의 문제점

4.1 사이버 무역법규으로의 전환의미

우선 정부 관계자의 표현대로 세계적으로 전자무역에 대한 정의 및 이에 대한 지원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자무역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게 된 이번 대외무역법의 개정안의 확정발표는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라 판단된다.⁴⁰⁾ 즉, 사이버무역지원법령의 개정은 인터넷으로 바이어를 찾아 상담하고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 친화적이며 지식 집약적인 디지털컨텐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무형의 재화교역을 육성

38) <http://tonggu-gch.ed.seoul.kr/study/come/kyw/0004.html>

39) 조정안은 법적 기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는 중재안과 구분된다.

40) www.iweekly.co.kr/200011/24/iw24_110.asp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대폭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⁴¹⁾

또한 대외무역법 개정시안의 주요 골자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자무역 지원조항을 대외무역법으로 통합 개편하고 “전자무역촉진을 위한 산자부장관의 시책수립 및 추진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대외무역법의 개정은 향후 21세기 무역거래의 승패를 좌우할 전자무역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개정안과 함께 통합무역정보망과 사이버 실크로드21 프로젝트, 사이버무역인력 양성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는 내년도에는 중소 벤처기업의 수출저변이 확대돼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발달로 음악파일, S/W 등 디지털컨텐츠의 국제적 온라인거래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⁴²⁾ 향후 대외무역법이 디지털컨텐츠의 국제적 온라인거래를 무역으로 인정하여 각종 지원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디지털컨텐츠 산업을 새로운 수출유망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디지털컨텐츠 산업도 국제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⁴³⁾

또한 전자무역은 획기적인 거래비용의 절감효과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게 대단히 고 부가가치적인 무역거래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 거래상대방을 서로 볼 수가

없는 구조적인 모순성으로 인해 그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무역사기가 빈발했으며 이로 인해 전자무역이 크게 위축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향후 실크로드21에 “(가칭)인터넷무역사기 고발센터”를 운영하여 불량거래자를 업계스스로가 색출하여 신고토록 하고 이를 모든 무역업체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여 향후 인터넷무역사기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2 개정안 규정상의 제문제점

1) 용어 선택의 타당성 문제

개정안 제2조 제4호에서는 “전자무역”의 개념을 “무역거래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발간한 전자상거래백서⁴⁴⁾에서는 전자무역이라는 용어가 전자제품의 무역과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가간의 전자상거래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이버무역이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이버무역이라는 용어가 합리적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용어의 선택은 그 법의 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본다면 개정안에서는 사이버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⁴⁵⁾

또한 개정안은 “전자무역”의 개념을 설정하면서 무역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전

41) www.forexbank.co.kr/TDNews/101005.asp

42) 온라인거래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지식집약산업인 디지털컨텐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아직 그리 높지는 않다. 예로 2000년 1월에서 8월까지 (CD내장) 패키지 S/W의 통관실적은 2억불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43)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대외무역법 개정, 2000. 10. 17.

44)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협회, 전자상거래백서, 2000. 6. p.408.

45) 굳이 전자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자(electronic)라는 용어가 사이버(cyber)라는 용어보다 법적으로는 공식적 용어로 굳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상거래와 전자무역을 별개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⁴⁶⁾ 전자상거래의 전체적인 체계와 어울리지 않는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거래”라는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과 관련된 상거래를 “전자무역”이라는 개념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이분법적 명칭사용은 정책적인 효과 이외에는 달리 유용성을 찾기 힘들 것이다.⁴⁷⁾ 굳이 “전자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에 의한 “무역”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전자거래”와 “전자무역”의 개념과 그 적용범위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토대로 시행에 따르는 효과의 면밀한 분석·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전자무역중개기관과 관련된 문제

(1) 입법 기술적 문제

개정안 제12조 제1항의 본문은 “- - - 전자무역중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인증관련업무), 제2호(공인인증마크부여), 제3호(수출입확인서 발급), 제4호(전자무역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의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업무를 나열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표현이 문제될 수 있는 바, 이는 각 호에 규정되는 내용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해석하면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업무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중 어

느 하나만을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개정안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표현보다는 각 호의 규정된 모든 내용을 충족한다는 의미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으로 용어의 표현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2) 중개의 개념에 대한 문제

법률적인 의미에서 중개란 “추진중인 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교섭하여 그들간의 계약에 체결되도록 진력(조역)하는 사실행위”이다. 즉, 계약의 중개와 계약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단지 일방 당사자에게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서의 작성만을 대행하여주는 행위는 중개가 아니다. 그러나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업무내용을 보면 이는 법적 개념의 중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개기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예를 들어 “전자무역사업자”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선정 문제

우선 대외무역법 개정안에 포함된 전자무역중개기관 제도의 신설이 새로운 규제행정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 업체는 누구나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비록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받지 않더라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규제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제도를 행정규제가 아닌 조장정책으로 분류한 바 있다.

46) 전자무역은 전자상거래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OECD나 미통상성, EU 등에서는 전자무역을 위한 별도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전자상거래의 개념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7) 강현구, 대외무역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 한국전자거래표준원, e-commerce, 2000. 7·8월호, p.71.

전자무역중개기관 제도는 전자무역을 위한 업계의 불신을 제거하고 전자무역을 신속히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정책목표상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나,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그렇지 못한 기관에 비해 불공평하게 공신력이 제고될 수 있고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기업들의 반발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전자무역 중개기관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나 각종 민간 단체들이 제각기 홈페이지 구축 작업에 열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수많은 예산과 비용을 들여 구축된 홈페이지가 오프라인 무역업무의 개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학연, 지연, 혈연을 동원하는 한국적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실제 무역업무의 전산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무역 중개기관의 선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전자무역거래촉진시책의 수립시행 규정의 중복

개정안 제10조에서는 전자무역거래 촉진을 위하여 시책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무역거래 촉진시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각 호의 규정은 전자거래촉진을 위한 전자거래기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⁴⁸⁾과 순서만 바뀌

었을 뿐 그 내용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과 전혀 다른 거래의 개념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닌 한, 동일한 애용을 개별 법마다 중복하여 규정할 것이 아니라, 개정안에서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거래촉진촉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4) 전자무역관련 증명서의 전자적 발급 및 법적 효력의 미규정

위에서 살펴보는 못하였지만, 개정안에 전자무역관련 증명서의 전자적 발급에 대한 규정 및 법적 효력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즉, 전자무역을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역거래로 정의하고 있으나, 무역거래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예로 원산지 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는 여전히 off-line으로 통용되는 형태에 대한 규정만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러한 증명이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무역거래자는 on-line과 off-line의 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무역거래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완결될 수 있도록 무역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명서들도 전자적 발급이 가능하고 법적이 효력을 인정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8) 제20조(전자거래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전자거래 촉진을 위하여 전자거래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 전자거래 촉진계획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전자거래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거래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전자거래 과세원칙에 관한 사항 3. 전자지급제도에 관한 사항 4.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사항 5. 소비

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등 전자거래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 인증, 암호화 등 전자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전자거래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전자거래 환경조성, 수요창출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전자거래 촉진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타 전자거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⁴⁹⁾

5) 디지털제품의 개념에 대한 논란소지

디지털제품의 온라인거래의 성격에 관한 국제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등은 디지털 제품의 재화 인정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상품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⁵⁰⁾

즉, 디지털제품의 온라인거래를 재화의 거래로 보아 GATT가 규율할 것인지, 서비스의 거래로 보아 GATS가 규율할 것인지 대립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유럽과는 달리 GATS에 비해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가 용이하지 않은 GATT의 규율을 희망하고 있다.⁵¹⁾ 이에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디지털제품 자체를 물품과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정의함으로써 이러한 국제적 논의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⁵²⁾ 그러나 향후 국제기구들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이 개념정의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 법체계와의 조화

대외무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에서 빠트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거래와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나 법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이나 전자서명법과의 체계적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기존의 법규범과 논리적으로 모순·충돌되지 않으면서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는 내용의 법규범체계를 형성할 수 있고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민간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7) 지적재산권 및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

이번에 정부가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해외수출을 법적으로 인정한 만큼 관련 법규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만 보더라도 특허출원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의 분석에 따르면 인터넷 관련 핵심 기술 대부분이 외국기업에 집중돼 있어 올해 말부터 우리나라도 외국의 특허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시스템 면에서 전자무역은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계약 이전의 거래 알선 단계와 EDI를 중심으로 한 계약 이후의 서류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단계로 대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은행, 보험, 물류, 통관 등 오프라인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표준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전자의 경우는 단순 알선에 그치는 관계로 표준화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하게 들릴 정도다. 그러나 전자무역을 궁극적으로 윈스톱 무역을 지향한다면 단순 알선을 넘어 저렴한 비용으로 실제 무역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향후 양자가 시스템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통일된 인프라 구축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49) 강현구, 전제논문, p.71.

50) <http://korea.cnet.com/news/2000/10/13/20001013d.html>

51) 대외무역법이 디지털콘텐츠의 온라인거래를 재화의 거래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디지털콘텐츠의 온라인거래를 무역거래로 인정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52)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대외무역법 개정, 2000. 10. 17.

V. 결론

정보기술 및 지식산업이 21세기 강대 국가 생존의 관건이 되면서 선진국들은 앞을 다투어 전자상거래 표준화를 통해 아날로그 시대에 이어 디지털 시대와 사이버 무역의 추진을 강력히 이루어 나아가고 있다. 선진국들의 이러한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 정부도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외무역법을 사이버무역 진흥을 위한 종합지원법으로 특화함으로써 무형의 재화교역을 육성하려는 정부의지가 강력히 반영되었으므로 향후 사이버무역의 활성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본 개정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행령과 관련법규의 개정 등 많은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발효될 때까지는 그 과정과 추세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규정상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조화로운 일치를 위해서도 지적된 문제점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현구, 대외무역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0, 7·8월호.
- 관세청, 경제국경에서 한국경제와 함께 한 30년~관세청 30년사~, 2000, 12. 15.
-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외,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2000. 2. 15.
-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협회, 전자상거래 백서, 2000. 6.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대외무역법 개정, 2000, 10. 17.
- 서정두, 국제통상법, 삼영사, 1998.
- 신동수, 대외무역법, 법경사, 1996, 2.
- 재정경제부 세제실, 전자상거래 과세문제 검토 및 대응방안, 회의자료, 1999, 11. 13. p.11.
- 平野普·牧野和夫, 判例國際インターネット法, 프로스퍼-企劃, 1998, p.663
- 한상현·권오,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부과의 논의와 우리의 추진과제,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정보학연구, 제3권 제1호, 2000, 3.
- 한상현 외, 국제통상법규, 도서출판 신성, 1999, 2.
- 한상현 외, 전자상거래에서 On-Line에 의한 매매계약성립의 전제조건~ Revised 1996 UCC Draft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경영학회, 산학경영연구, 제12권. 1999, 12.
- 한상현 외, 전자상거래하에서 물품매매계약의 성립시기~ EDI, E-Mail, WWW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산업과 경제 제9집 2호(통권 제17호), 1999. 12.
- Kent D. Stuckey, Internet and Online Law, Law Journal Seminar Press, 1996.
- Thomas L. Lockhart and Patrick A. Miles, Jr., No More Pulp Fiction : Proposed UCC Article 2 Revisions Embraces Paperless Electronic Transactions, Michigan Bar Journal, June 1996.
- <http://korea.cnet.com/news/2000/10/13/200010>

13d.html

<http://tonggu-gch.ed.seoul.kr/study/comi/kyw/0004.html>

www.centernews.co.kr/event/0602-2.html

www.ecommerce.go.kr/rule/rule5_4.asp

www.forexbank.co.kr/TDNews/101005.asp

www.iweekly.co.kr/200011/24/iw24_110.asp

www.keb.co.kr.htm/kor/news.htm

www.kmi.re.kr/kor/alim/200010/alim20001017

1.htm

The Evaluation and Some Problems for System-Transformation of Foreign Trade Law in Korea

Sang-Hyun, Han*

Abstract

Years in preparation, the revised law on Foreign Trade Law of Korea came into effect on March 1, 2001, adopted at the Congress on June 17, 2000.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by means of contriving to maintain the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and to expand commerce, and through promoting foreign trade and establishing fair trade system.

Particular, revised Foreign Trade Law of Korea shall be based on the general provisions on transactions of exports or imports and measures for promotion of electronic Trade.

Because electronic trade is not bound by physical geography provides a fundamentally new way of conducting commercial transactions, therefore Korea importers and exporters need to be aware of the character and problems that may occur from what was above-mentioned revised Foreign Trade Law of Korea.

In the thesis, i tried to explain and survey the character and evaluation of revised Foreign Trade Law in Korea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revised frameworks for electronic commerce on focus legal and commercial problems.

* Lecturer Dept, of Economics and Commerce, Kang-Nam University.